

2007. 5.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007.4.10	2007.4.13	2007.5.8	2007.5.8	심종섭 의원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5.2	2007.5.2	2007.5.8	2007.5.8	총무과장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	"	"	"	주민생활 지원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들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날로 퇴색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꺼져가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뜻에서 시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원사업(안 제3조)
 - 참전유공자에게 월 1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에게 15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지원

○ 지원대상자(안 제4조)

-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 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자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로부터 수당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충북 지원 금지)

○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5조)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미신청시 미지급, 소급지급 금지)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등이 지급 신청
- 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이후 매분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지원대상자 결정(안 제6조)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 후 통보
- 기 수령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결정은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엄정면 율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엄정면과 산척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율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면간 경계변경

- 엄정면 율능리 10필지($894m^2$)를 산척면 영덕리로 편입
- 산척면 영덕리 8필지($1,515m^2$)를 엄정면 율능리로 편입

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안 제5조)
 -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폐기물
 - 협약에 따른 폐기물
- 일반인의 출입 제한(안 제10조)
 - 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매립 및 복토작업이 실시중인 경우
 - 일몰전후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매립시설 업무 및 관리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
- 폐기물 반입 허용시간(안 제13조)
 - 하절기(3월1일 ~ 10월31일) : 02:00 ~ 10:00
 - 동절기(11월1일 ~ 다음해 2월 말일) 03:00 ~ 11:00
 - 기업도시 지원사업 인력 존속기한(2007.6.30) 삭제(9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본 조례안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참전유공자의 정의(관계법령 참조)로 규정한 대상자 중 6.25참전 유공자만을 지원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가를 위해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덧붙여, 국가를 위해 참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금전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우리 시의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추진된 엄정면 율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엄정면과 산척면의 경계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변경되는 사항은 노곡마을 진입로를 중심으로 엄정면 율능리 10필지 894m²는 산척면 영덕리로 편입하고 산척면 영덕리 8필지 1,515m²는 엄정면 율능리로 편입하여 도로를 따라 본 지역의 면간 경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본 개정안과 같이 구역이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의 편의증진과 환지업무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 시설이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처리 과정만 관리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조례로 일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매립하기에 부적절하게 수집되거나 운반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단계에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되도록 하였고
- 안 제10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12조에서 감시권한이 주어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매립장 감시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매립시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질의 : 타시군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 답변 : 6개 시군에서 시행중임.

▶질의 : 지원대상자 적격 심의는 누가 하는가?

- 답변 : 보훈청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판단

▶질의 : 월남참전자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인가?

- 답변 : 6.25 참전용사는 모두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월남참전자의 경우만 해당하게 되는 사항임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각종 공부 정리 기간은?

- 답변 : 시에서 정리할 것은 즉시 이행될 것임. 타 기관 소관은 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인데 조속히 정리 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질의 : “없 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수정의결
[수정요점]
○ 대상자 확대
- 당초 : 6.25참전자
- 수정 : 65세 이상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 사망위로금 15만원 삭제
-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수정안 1부.
- 나.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내지 제4호를 제3호내지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지원대상자는' 다음에 '65세 이상의'를 삽입하고, 제2항 제2호 '보상금을 받는 자'를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안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를 삭제하여 제3항으로 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조례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생략) 1.(생략) <u><신 설></u></p> <p><u>2.-4.(생략)</u></p> <p>제3조(생략) 1.(생략) <u>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15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u> 3.(생략)</p> <p>제4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삽입)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생략) 1.(생략)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u>보상금을 받는 자</u> <u><신 설></u></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②(생략) ③사망위로금은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p>	<p>제2조(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u>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u> <u>3.-5.(제정안 제2호내지 제4호와 같음)</u></p> <p>제3조(제정안과 같음) 1.(제정안과 같음) <u><삭 제></u> <u>2.(제정안 제3호와 같음)</u></p> <p>제4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u>65세 이상의</u> <u>-----</u> ②(제정안과 같음) 1.(제정안과 같음) <u>2.-----</u> <u>-----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u> <u>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u></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②(제정안과 같음) <u><삭 제></u></p>

제 정 안	수 정 안
<p>④ 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 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분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u>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u>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⑤ <u>(생략)</u></p>	<p>③ _____ _____ _____ _____ < 부분삭제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④(제정안 제5항과 같음)</p>